
		<h1>보도자료</h1> <p>2021. 12. 2.(목) 배포</p>			
보도일	배포 즉시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오신종 이혜윤	(☎ 044-203-6648) (☎ 044-203-6683)

교육부 소관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특수교육법, 장학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 ◆ 장애유형·장애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의 장애 학생 편의 제공 근거 마련
- ◆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들의 이자부담 완화와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 대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환경위생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는 근거 마련
- ◆ 보건교육에 스마트 기기 및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근거 마련
- ◆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현황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근거 마련
- ◆ 초·중·고 시설사업 사전기획 제도 및 수목·생태환경 조성·관리 근거 마련
- ◆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주체를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2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 (학급설치기준 하향 조정)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는 학교급별 학급 설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맞춤형 치료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 (순회교육 지원 강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 실시를 위해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등에 설치·운영하는 학급에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장애대학생 지원 강화)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의무화하여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 【붙임2】 1 참고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2010~2012학년도 일반상환학자금 기준, 5.7~3.9% 고정금리)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전환 대출을 2012년에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까지 확대*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 2009.12.31.까지의 대출 대상으로 (1차)2014.5.14.~2015.5.13., (2차)2020.3.24.~2021.3.23.에 전환대출(금리: (평균)6.96% → 2.9%) 지원
- 또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이 포함되어,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취업난 등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이 경감되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붙임2】 2 참고

[3.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과 ‘도박중독의 예방’을 추가하였다.
-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검결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 학교의 장애인에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를 매년 2회 이상 정기로 점검하도록 하였다.

☞ 【붙임2】 3 참고

[4. 학교급식법(일부개정)]

- 소규모 유치원의 체계적인 급식 관리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다.
- 재난 발생으로 학교급식 제공이 어려울 때, 교육감이 학교급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 학교급식을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할 때 교육감이 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공급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2】 4 참고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교육감이 정비사업시행자 등이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의하도록 하였다.
-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건축 환경·재해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였다.

☞ 【붙임2】 5 참고

[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현황 실태조사 실시
 - 교육부장관은 매년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현황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한다.
 - 조사결과, 필요할 때는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시설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
 -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감염예방을 포함하고, 교육시설의 디자인 기법에 우선 적용한다.
-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 심리치료 지원
 -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에게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사업범위에 포함한다.
- 초·중·고 시설사업에 대한 사전기획 제도 마련
 - 초·중·고 시설사업 추진 시 사전기획 및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 수행 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의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됨으로써 교육시설에 특화된 기획,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 교육시설기본계획 등에 수목 및 생태환경 관련 사항 추가
 - 생태전환교육의 필요성 측면에서 교육시설기본계획에 초·중·고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붙임2】 6 참고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으로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명시하는 한편,
 -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가능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시도 및 시·군·자치구'까지 확대하여, 교육자치가 강화되고 지자체의 교육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2】 7 참고

법안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정책과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과장 김선미(6569), 진창원 연구관(6563) 팀장 정상은(6776), 조영석 사무관(6312)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최우성(6285) 윤은정 사무관(6271)
학교보건법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김태환 사무관(6541) 양장묵 연구관(6544)
학교급식법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김동로 사무관(6543) 강행화 사무관(654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김태환 사무관(654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안전팀 학교시설과	팀장 김관영(7131), 김기필 사무관(6299) 과장 정영린(6308), 조준영 사무관(6183) 정태성 사무관(63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최기혁(6199) 윤지효 사무관(6997)

- 【붙임】 1. 12. 2.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2. 법안별 주요 세부내용



12. 2.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순	법률명	주요내용
1	<p>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p> <p>윤두현, 5099 김철민, 9674 조경태, 9248 권인숙, 9665 강민정, 10057 서동용, 112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명칭 변경하고, 교육감이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의료기관 등에 설치된 학급에 담당교원 배치 근거 마련, 건강 장애학생의 학교 복귀를 위한 지원 의무화 ·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 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 조정 근거 마련,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 제공 · 대학에서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편의 제공, 장애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규정
2	<p>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의 관한 법률</p> <p>김영식, 756 김철민, 2121 김철민, 3647 이탄희, 537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대출' 대상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3년 간 시행 · 학자금 지원 대상(고등교육기관)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 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을 포함
3	<p>학교보건법</p> <p>최형두, 5676 조경태, 11325 조경태, 120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과 '도박 중독의 예방'을 추가 · 학교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점검결과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보완 ·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4	<p>학교급식법</p> <p>이탄희, 3132 이원욱, 8583 조경태, 9249 정찬민, 92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 ·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급식 제공이 어려울 때 교육감이 학교 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학교급식을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할 때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
5	<p>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p> <p>김병욱, 984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분야의 전문가 추가 · 교육감이 정비사업시행자 등이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의

순	법률명	주요내용
6	<p>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p> <p>오영훈, 9736 강득구, 10869 김철민, 10960 윤영덕, 1279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초·중·고 시설사업에 대한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규정하여 해당업무 수행 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상의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봄 • 교육시설기본계획에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초·중·고 교육환경은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도록 함 •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감염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의 디자인에 감염예방을 위한 기법 적용 •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에게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고 안전원의 사업 범위에 포함
7	<p>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p> <p>박찬대, 1178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 정비 •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진출가능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시·도 및 시·군·자치구'까지 확대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장애학생이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급별 학급설치기준 조정, 편의 제공 등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명칭 변경하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하였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닌 경우 등을 포함하였다.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 시설 등에 설치·운영하는 학급에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교급별 학급 설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맞춤형 치료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학생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하였다.

* 청각장애인을 위해 실시간으로 모든 음성 내용을 문자로 방송해주는 서비스

□ 동 개정으로 인해

- 국가 및 시도교육청, 대학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특수교육대상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특수교육정책과	과장 김선미(6569), 진창원 연구관(6563)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팀장 정상은(6776), 조영석 사무관(631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 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u>보조인력지원</u>·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p> <p>3. ~ 12. (생 략)</p> <p>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p> <p>① <u>정부는</u>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p> <p>1. ~ 10. (생 략)</p> <p>11. <u>그 밖에</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p> <p>②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u>지원인력배치</u>----- ----- -----.</p> <p>3. ~ 12. (현행과 같음)</p> <p>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p> <p>① <u>교육부장관은</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 -----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u> -----</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21조(통합교육) ① (생략)</p> <p>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u>보조인력의 지원</u>,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21조(통합교육)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지원인력의 배</u> <u>치</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5조(순회교육 등) ① ~ ③ (생략)</p> <p>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u>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u></p> <p>⑤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u>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 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u>할 수 있다.</u></p>	<p>제25조(순회교육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u> <u>담당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u> <u>조치를 강구하며, 학생들이 원만히</u> <u>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u> <u>·정서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u></p> <p>⑤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u>----- ----- ----- ----- ----- ----- ----- <u>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⑥ (생략)</p> <p>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생략)</p> <p>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u></p>	<p>⑥ (현행과 같음)</p> <p>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u>----- ----- -----.</p>
<p>③ (생략)</p> <p>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생략)</p> <p>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p> <p>③ <u>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p> <p>③ <u>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u>----- ----- <u>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u></p>

현행	개정안
<p>④ (생략)</p> <p>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u>통학 보조인력의 지원</u>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u>하여야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통학</u> <u>지원인력의 배치</u>----- -----.</p>
<p>⑥ ~ ⑨ (생략)</p>	<p>⑥ ~ ⑨ (현행과 같음)</p>
<p>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생략)</p> <p>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 같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p>	<p>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2. (생략)</p> <p>3. 교직원·<u>보조인력</u>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p>	<p>1.·2. (현행과 같음)</p> <p>3. -----<u>지원인력</u>----- -----</p>
<p>4.·5. (생략)</p> <p>③ (생략)</p>	<p>4.·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p>	<p>제31조(편의제공 등) ① ----- ----- ----- -----</p>

현행	개정안
<p>하고 제공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u>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u></p> <p>3. ~ 5. (생략)</p> <p>②·③ (생략)</p> <p><u><신설></u></p> <p>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u>필요한</u>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교육지원인력</u>-----</p> <p>-----</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u></p> <p>제32조(학칙 등의 작성) -----</p> <p>-----</p> <p>-----<u>다음 각 호에</u> 해당하는-----</p> <p>-----.</p> <p>1. <u>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u></p> <p>2. <u>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u></p> <p>3. <u>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u></p> <p>4. <u>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u></p>

연	행	개	정	안
		<u>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전환대출 확대 시행과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에 대한 학자금 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환대출 확대 시행)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10~12학년도 일반상환학자금 기준, 5.7~3.9% 고정금리)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 저금리 전환대출을 '12년 기대출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3년간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다.

* '09.12.31.까지의 기대출 대상으로 2회(1차 '14.5.14~'15.5.13., 2차 '20.3.24~'21.3.23) 전환대출 시행(금리: (평균)6.96% → 2.9%)

○ (학점은행제 기관 포함) 학자금 지원 대상(고등교육기관)에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이 인정되는 '학점은행제 운영기관'을 포함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 대출은 대상 기관의 다양한 운영 형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취업난 등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이 경감되고,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최우성(6285) 윤은정 사무관(627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u>3의3.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u></p> <p>4. ~ 5. (생략)</p> <p>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p> <p>가. ~ 다.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3의2.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u></p> <p><u><삭제></u></p> <p>4. ~ 5. (현행과 같음)</p> <p>6. ----- ----- -----.</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u>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u></p>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 ④ (생략)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⑦ (생략)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①

(생략)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자시스템(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
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및
-----「평생교육법」 제18조의2에 따
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

⑥·⑦ (현행과 같음)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준 및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 6. (생략)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8. (생략)

③ ~ ⑧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
---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8.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라목, 제3조제2항 및 제50조의5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2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3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을 통해 보건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의 환경 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한 후 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교육)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과 “도박 중독의 예방”을 추가하였다.
- (점검횟수) 현재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있는 공기 질 외에 환기·조도·소음 등의 항목도 연 2회 점검(현재 연 1회 점검)토록 하고, 점검결과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 (측정장비) 공기 질 측정결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현재 연 1회 점검)하도록 하였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의 범주를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김태환 사무관(654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생 략)</p> <p>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점검하고</u>,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u>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u>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 ⑦ (생 략)</p> <p>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관리 특례) ① (생 략)</p> <p>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p>	<p>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연 2회 이상 점검하고</u> ----- ----- ----- ----- ----- ----- ----- ----- -----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u>지체 없이 시설</u> ----- ----- ----- ----- ----- -----</p>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관리 특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
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
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
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
(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
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2회 -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

-----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
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4 학교급식법(일부개정)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을 통해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으로 학교급식 제공이 어려울 때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규모 유치원 지원)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학생 가정 식재료 지원)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급식 제공이 어려울 때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학교급식 식품구성) 학교급식을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할 때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유아들의 급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에도 학생 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학생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김동로 사무관(6543), 강행화 사무관(654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p> <p>1. (생략)</p> <p>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u>경비의 지원</u></p> <p>3.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②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 ----- ----- -----.</p> <p>1. (생략)</p> <p>2. ----- -- <u>경비 및 식재료 등</u>-----</p> <p>3.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u></p> <p><u>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u></p>

현행	개정안
<p>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 ② (생략) <u><신설></u></p>	<p><u>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한다.</u></p>
<p>제11조(영양관리) ① 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u>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u> ②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u>교육부령으로 정한다.</u></p>	<p>제11조(영양관리) ① ----- ----- ---<u>충족하고 올바른</u>----- ----- <u>있도록 다양한</u>-----. ② ----- ----- <u>정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다.</u></p>
<p>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u>지</u></p>	<p>제13조(식생활 지도 등) ----- ----- ----- ----- ----- ----- ----- ----- ----- <u>교육 및</u></p>

현행	개정안
<p>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p>	<p><u>지도</u>----- -----.</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u>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p>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추가하고,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을 제공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도위원회)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였다.
- (교육환경평가) 교육감은 정비사업시행자 등이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교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추가하고,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시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김태환 사무관(654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② (생략)</p> <p>③ 시·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1. ~ 4. (생략)</p> <p><u><신 설></u></p> <p>5. (생략)</p> <p>④ ~ ⑨ (생략)</p> <p>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 ② (생략)</p> <p>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u>검토의견을 함께 제공하여야</u> 한다.</p>	<p>제5조(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④ ~ ⑨ (현행과 같음)</p> <p>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u>검토의견과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을 말한다)</u>-----.</p>

현행	개정안
<p>④ ~ ⑦ (생략)</p> <p>⑧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절차·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⑧ ----- ----- -----<u>및 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u> <u>절차 등</u>----- -----.</p>

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교육시설법」 일부개정을 통해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 교육시설의 설계전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 제도 수행 절차,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재난피해 심리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방시설 등)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교육시설 감염예방)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감염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디자인기법에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재난피해 심리치료) 화재 등 교육시설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에게 심리적 치료를 지원한다.
- (사전기획 절차 마련 등) 초·중·고 시설 설계 전 사전기획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하였으며, 해당 업무 수행 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상의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 (수목 및 생태환경) 교육시설기본계획 수립 시 초·중·고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조성 기본방향에 수목 및 생태환경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소방시설 등) 교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로부터 학생의 안전 확보 및 안전한 교육시설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사전기획 절차 마련 등) 교육시설에 특화된 사전기획 절차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공간 설계의 특수성 반영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수목 및 생태환경)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초·중·고 생태관련 교육과 교육환경 간 연계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안전팀	교육시설과 과장, 정영린(6308), 조준영(6183), 정태성(6302) 교육시설안전팀 팀장 김관영(7131), 김기필 사무관(629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9.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p> <p>1. ~ 9. (현행과 같음)</p> <p><u>10. “사전기획”이란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 발주방식 검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안전 및 에너지 효율화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9. (생략)</p> <p><u><신설></u></p>	<p>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p> <p>1. ~ 9. (현행과 같음)</p> <p><u>10.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초·중·고등학교”라 한다) 내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u></p>

현 행	개 정 안
<p>10. (생 략) ③ ~ ⑥ (생 략)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 4. 교육시설의 <u>환경</u>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생 략) ② ~ ⑤ (생 략) <u><신 설></u></p>	<p>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 등) ① ----- ----- ----- ----- ----- ----- ----- ----- ----- ----- -----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 4. -----<u>감염예방, 환경</u> ----- -----</p> <p>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u>제10조의2(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하여 실</u></p>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시정명령) 감독기관의 장</p>	<p><u>태조사를 하여야 한다.</u></p> <p><u>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u>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 강화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21조(시정명령) -----</p>

현행	개정안
<p>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1. (생략)</p> <p><u><신설></u></p> <p>2. 3. (생략)</p> <p>제25조(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조성되어야 한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제26조(교육시설의 디자인) ① (생략)</p> <p>② 교육시설은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공간구조, 범죄예방, <u>무장애</u>, 생태, 친환경, 녹색, 교통정온화, 청정환기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p>	<p>----- ----- -----.</p> <p>1. (현행과 같음)</p> <p><u>1의2.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u></p> <p>2. 3. (현행과 같음)</p> <p>제25조(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지역사회 환경 개선과 학생의 환경교육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은 수목 및 생태환경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u></p> <p>제26조(교육시설의 디자인)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감염예방, 무장애---</u> ----- -----.</p>

현행	개정안
<p>③ (생략) <u><신설></u></p>	<p>③ (현행과 같음) <u>제26조의2(사전기획) ① 초·중·</u> <u>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은 대통령</u> <u>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을</u> <u>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설</u> <u>계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u> <u>포함한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하</u> <u>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u> <u>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u> <u>시설과 지역 사회 연계에 관한</u> <u>사항</u> <u>2. 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u> <u>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u> <u>3.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u> <u>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u> <u>4.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u> <u>5.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u> <u>성 제고방안</u> <u>6.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u> <u>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령</u> <u>으로 정하는 사항</u> <p>② <u>제1항에 따라 사전기획 업</u> <u>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u> <u>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u> <u>따른 건축기획업무를 수행한 것</u> <u>으로 본다.</u></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③ 초·중·고등학교의 감독기관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p> <p>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 터 또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 문기관</p> <p>3. 교육시설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p> <p>④ 그 밖에 교육시설의 사전기 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 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6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 성 검토) ① 초·중·고등학교 의 감독기관의 장은 제26조의2 에 따른 사전기획 업무의 부실 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6조의2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자에게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여부 에 관한 검토를 요 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p>

현 행	개 정 안
<p>제34조(교육시설 <u>공제사업의 실시</u>) ① (생략) <u><신설></u></p> <p><u><신설></u></p>	<p>제34조(교육시설 <u>공제사업 등의 실시</u>)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 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과 지원의 범위와 대상 등에</u></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제36조(안전원의 사업) ①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6. ~ 16. (생략)</p> <p>② (생략)</p> <p>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u><신설></u></p> <p>1.·2. (생략)</p> <p>②·③ (생략)</p> <p><u><부칙></u></p>	<p><u>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④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36조(안전원의 사업) ① ----- -----.</p> <p>1. ~ 5. (현행과 같음)</p> <p><u>5의2.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사업</u></p> <p>6. ~ 1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2조(벌칙) ① ----- ----- -----.</p> <p><u>1.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소방시설의 중대한 결함 또는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미확보 등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한 자</u></p> <p>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부칙></u></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u></p> <p><u>제3조(사전기획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전기획을 의뢰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교육시설 사업부터 적용한다.</u></p>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용어를 정비하였고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주체를 확대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용어 정비) 각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를 정비하였다
- (전출가능주체 확대)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가능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시·도 및 시·군·자치구’까지 확대하였다.

☐ 동 개정으로 인해

- 교육자치가 강화되고, 지자체의 교육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044-203+내선번호)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최기혁(6199), 윤지효 사무관(699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생략)</p>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u>교육행정기관</u>의 <u>장</u>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각 시·도 <u>교육행정기관의 장</u>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 <u>교육감</u></p> <p>-----</p> <p>-----</p> <p>-----</p> <p>----- <u>교육감</u>-----.</p>
<p>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생략)</p>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도의 <u>교육행정기관의 장</u>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교부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p>	<p>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 <u>교육감</u>-----</p> <p>-----</p> <p>-----</p> <p>-----</p> <p>-----</p> <p>-----</p> <p>-----</p>

현행	개정안
<p>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시·도의 <u>교육행정기관의 장</u>은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⑤ 교육부장관은 시·도의 <u>교육행정기관의 장</u>이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p> <p>⑥ (생략)</p> <p>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p> <p>· ② (생략)</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의 <u>교육행정기관의 장</u>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⑤ (생략)</p> <p>⑥ 시·도의 <u>교육행정기관의</u></p>	<p>-----.</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u>교육감</u>-----</p> <p>-----</p> <p>-----</p> <p>-----</p> <p>-----.</p> <p>⑤ ----- <u>교육감</u>-----</p> <p>-----</p> <p>-----</p> <p>-----</p> <p>-----</p> <p>-----</p> <p>-----.</p> <p>⑥ (현행과 같음)</p> <p>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p> <p>·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p> <p>-----</p> <p>-----</p> <p>-----</p> <p>----- <u>교육감</u>-----</p> <p>-----.</p> <p>④·⑤ (현행과 같음)</p> <p>⑥ ----- <u>교육감</u>-----</p>

현행	개정안
<p>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p> <p>⑦ 시·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u>교육행정기관의 장</u>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p> <p>⑧ (생략)</p> <p>⑨ <u>시·도</u>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u>제2항 각 호</u>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p> <p>⑩ (생략)</p> <p>제13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도의 <u>교육행정기관의 장</u>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결</p>	<p>----- ----- ----- ----- ----- -----.</p> <p>⑦ ----- ----- ----- <u>교육감</u> ----- -----.</p> <p>⑧ (현행과 같음)</p> <p>⑨ <u>시·도 및 시·군·자치구</u>----- ----- <u>제2항 및 제8항</u> ----- -----.</p> <p>⑩ (현행과 같음)</p> <p>제13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 <u>교육감</u> ----- ----- ----- ----- ----- ----- ----- ----- ----- -----.</p> <p>② ----- ----- -----</p>

현행	개정안
<p>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u>교육</u> <u>행정기관의 장</u>에게 알려야 한다.</p>	<p>----- <u>교</u> <u>육감</u>-----.</p>